산업통상자원부	보도자료	http://www.motie.go.kr

2018년 8월 1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7. 31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8. 7. 31(화)	담당부서	FTA서비스투자과
담당과장	신성주 과장(044-203-5810)	담 당 자	신서현 사무관(044-203-5815)

한-터키 FTA 서비스·투자 협정 발효

- 對터키 서비스 교역 활성화와 우리 기업의 투자 보호 강화 기대 -

□ 한-터키 간 FTA 서비스·투자 협정이 지난 6월 양국 간 국내절차*를 최종 마무리하고 **'18.8.1(수) 본격 발효**된다.

* 동 협정은 '15.2월에 서명되었으나, 터키측 사정으로 일부 기술적 수정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어 발효가 예상보다 지연됨

○ 한-터키 FTA는 '13.5월 상품협정 발효 이후 금번 서비스·투자 분야까지 협정 범위가 확대되어, **양국 간 교역 증진**과 함께 경제성장률 7% 이상('17년)의 **신흥 시장 터키에 대한 우리 기업 진출이 보다 활발해질 것**으로 전망된다.

□ 금번 서비스·투자 협정은 對**터키 건설(건설·엔지니어링), 여가문화(영화·비디오 제작·배급, 공연) 서비스** 분야 등에서 개방 수준을 높이고,

* 터키는 '05년 WTO DDA 협상시 제시된 양허안보다 18개 분야 추가 개방

○ **안정적인 기업 투자를 위한 보호 규범을 강화**하여 최근 터키 내 **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***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* 유라시아 해저터널('13년), 차나칼레 대교('17년) 건설 등

□ 향후 정부는 서비스무역 위원회 등 FTA 이행채널을 본격 가동하여 **우리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**하는 등 **FTA 협정 효과 증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**해 나갈 계획이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FTA서비스투자과 신성주 과장(☎044-203-5810), 신서현 사무관(☎044-203-581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한-터키 FTA 서비스·투자 협정 협상 추진 경과

□ '10.3월 한-터키 FTA 협상 출범 선언

□ '10.4월~'12.3월간 총 4차례 공식협상* 및 3차례 소규모 협상** 개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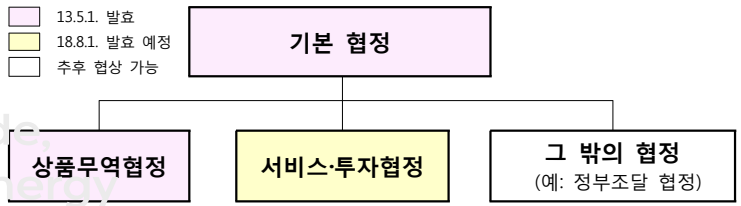
* 1차 '10.4월(앙카라), 2차 '10.7월(서울), 3차 '11.3월(앙카라), 4차 '12.3월(서울)

** 1차 '11.11월(서울), 2차 '12.1월(앙카라), 3차 '12.2월(이스탄불)

□ '12.3.26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우선 타결

□ **'13.5.1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우선 발효**

【 한-터키 FTA 협정 구조 】

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□ '13.8.21~22(앙카라) 한-터키 FTA 서비스·투자협정 제4차 협상

* 서비스·투자협정은 '11.3월 제3차 협상까지 진행 후 중단되어, 상품무역협정 발효 후 1년 내 타결을 목표로 설정(기본협정 제1.5조)

□ '13.11.18~21(서울) 한-터키 FTA 서비스·투자협정 제5차 협상

□ '14.2.20~21(브뤼셀) 한-터키 FTA 투자협정 회기간 협상

□ '14.4.2~4(앙카라) 한-터키 FTA 서비스·투자협정 제6차 협상

□ '14.6.9~10(이스탄불) 한-터키 FTA 투자협정 회기간 협상

□ '14.6.30~7.4(서울) 한-터키 FTA 서비스·투자협정 제7차 협상

□ '14.9.18(앙카라) 한-터키 FTA 서비스·투자협정 영문본 가서명

□ **'15.2.26(서울) 한-터키 FTA 서비스·투자협정 서명**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8-07-31 15:13:04

참고 2 한-터키 FTA 서비스·투자 협정 주요 내용

1. 서비스 협정

□ **적용 범위**

○ 양국간 서비스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적용 대상으로 하되, 연안 해상운송, 항공운송*, 정부조달, 보조금, 정부제공 서비스는 제외

* 단, 항공기 유지·보수, 항공운송 판매·마케팅, 컴퓨터 예약시스템 서비스는 포함

□ **자유화 방식**

○ WTO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(GATS)에서와 같이 양허표에 기재한 분야만 개방하는 포지티브(Positive) 방식을 채택

- 단, 향후 터키가 네거티브 방식의 협정 체결시, 우리측 요청에 따라 네거티브 후속협상을 개시할 것을 명시하여 추가 자유화 근거 확보

□ **일반적 의무**

○ **(내국민대우)** 상대국의 서비스 공급자 및 설립에 대하여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 및 설립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

○ **(시장접근 제한금지)** 공급자·설립의 수 혹은 사업의 범위를 한정하는 양적 제한, 설립 시 사업자의 법적 형태를 제한하는 규제 도입 금지

○ **(합리적인 국내규제)** 자격 요건 및 절차, 기술 표준, 면허 요건 등을 신설·개정할 때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근거할 의무

□ **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**

○ 양국 모두 자국의 DDA 양허안보다 높은 수준으로 서비스 시장 개방에 합의함에 따라, 향후 서비스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

- 터키는 **건설**, **문화**(영화·비디오 제작 및 배급, 공연 등), **환경** 등을 포함하여 총 18개 분야*에서 DDA 플러스(+) 수준의 개방을 약속

* WTO 서비스분류 155개 섹터 기준

2. 투자 협정

□ **적용 범위**

○ 非서비스 투자(1차 산업 및 제조업)에 한해 투자협정에서 규율하되, 서비스 분야 투자도 투자보호 조항을 적용받도록 규정

□ **자유화 방식**

○ 모든 분야의 자유화를 전제로 하되, 개방하지 않을 분야의 유보 목록을 작성하는 네거티브(Negative) 방식을 채택

□ **일반적 의무**

○ **(투자의 대우)** 설립전 투자에 대해서도 내국민대우·최혜국대우를 보장

○ **(이행요건 부과금지)**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의 설립, 인수, 확장, 경영, 영업, 운영, 매각, 처분 관련 이행요건 부과금지 의무 부과

○ **(혜택의 부인)** 제3국인이 소유하고 상대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상대국 기업(일명 페이퍼컴퍼니)에는 협정상 혜택을 부인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□ **투자자-국가 간 분쟁해결절차(ISDS)**

○ 기존 한-터키 BIT 대비 체계적으로 투자자-국가 간 분쟁해결절차를 규정*하여 對 터키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ISDS 제도 현대화

* 중재인 임명 관련 구체 절차, 냉각기간, 제척기간, 준거법 등에 관한 조항 추가

□ **기타 제도적 장치**

○ **(간접수용 부속서)** 간접수용의 정의, 간접수용의 판정기준, 간접수용의 예외(환경, 보건, 부동산정책 등)을 명확하게 규정

○ **(단기 세이프가드 부속서)** 한-미 FTA 수준의 송금 조항 부속서를 규정하여 투자자 보호와 국가 규제 권한 간 균형을 추구

□ **투자 개방 수준**

○ 우리는 농·축산업, 에너지, 부동산 등 분야, 터키는 농·어업, 광업, 부동산 등 분야에서 정부의 정책 권한을 확보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8-07-31 15:13:04

참고 3 한-터키 교역·투자 현황

1. 對터키 교역

단위 : 백만불, ()는 증감률 / 자료 : 한국무역협회

구 분	'08	'09	'10	'11	'12	'13*	'14	'15	'16	'17
수출	3,773	2,661	3,753	5,071	4,552	5,658	6,665	6,249	5,385	6,155
	(△7.7)	(△29.5)	(41.1)	(35.1)	(△10.2)	(24.3)	(17.8)	(△6.2)	(△13.8)	(14.3)
수입	362	434	516	805	672	692	655	789	742	782
	(28.5)	(20.0)	(18.8)	(55.8)	(△16.4)	(2.9)	(△5.3)	(20.5)	(△6.0)	(5.3)
수지	3,411	2,227	3,237	4,266	3,880	4,966	6,010	5,460	4,643	5,373
총 교역액	4,135	3,095	4,269	5,876	5,224	6,350	7,320	7,038	6,127	6,937
	(△5.4)	(△25.2)	(37.9)	(37.6)	(△11.1)	(21.6)	(15.3)	(△3.9)	(△12.9)	(13.2)

* '13.5.1. 상품무역협정 발효

** '18.5월 기준 터키는 우리의 제29위 교역 파트너 (수출 17위, 수입 45위)

2. 한-터키 투자

단위 : 백만불, ()는 신고건수 / 자료 : 산업통상자[illegible] 한국수출입은행

구 분	'08	'09	'10	'11	'12	'13	'14	'15	'16	'17
터키 → 韓	1.3	0.2	2.0	0.9	2.1	2.2	0.6	2.2	[illegible]	0.9
	(7)	(4)	(10)	(7)	(9)	(8)	(2)			(8)
韓 → 터키	89.8	247.1	66.6	135.8	292.3	179.1	91.3	242.	97.4	173.3
	(30)	(45)	(30)	(39)	(44)	(57)	(36)	(53)	(41)	(51)

3. 對터키 10대 교역품목 현황(2018.5월)

MTI 4단위 / 자료 : 한국무역협회

	수출품목	금액(백만불)	비중(%)	수입품목	금액(백만불)	비중(%)
1	합성수지	901	14.6	의약품	134	17.1
2	자동차부품	411	6.7	자동차부품	72	9.2
3	열연강판	310	5.0	기타금속광물	70	9.0
4	석유화학합성원료	277	4.5	직물제의류	45	5.8
5	선박	271	4.4	편직제의류	28	3.6
6	승용차	259	4.2	항공기부품	23	2.9
7	아연도강판	218	3.5	기타정밀화학원료	17	2.2
8	건설중장비	161	2.6	아연광	16	2.0
9	의약품	160	2.6	기타비금속광물	16	2.0
10	기타석유화학제품	156	2.5	기타석유제품	15	1.9
	소 계	**3,124**	**50.6**	**소 계**	**436**	**55.8**
	전 체	**6,155**	**100**	**전 체**	**782**	**100**